

[]먹는샘물 []먹는염지하수 []수처리제 []용기 수입신고서

접수번호	접수일자	처리일자	처리기간: 서류검사 5일, 관능검사 7일, 정밀검사 25일 ※ 둘 이상의 검사를 하는 경우에도 총 처리기간은 25일 이내입니다.
신고인	성명(법인은 명칭 및 대표자성명)	생년월일(수입업자등록번호)	
	주소(법인은 주된 사무실소재지)	전화번호	
신고사항	번호	품목	원산지
	규격	단위	단가
	수량	금액	용도
수입일	수출국	선적항	
선적연월일	수송편 및 선명	수입항	
수입 보관창고	화물사고유무	제조회사	
수입 대행업체	(전화번호:)		
수입 승인서 (Import License)	선하증권 (Bill of Landing)		

「먹는물관리법」 제2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.

년 월 일
신고인 (서명 또는 인)

시 · 도지사 귀하

첨부서류	1. 수입판매업등록증 사본 2. 송장 · 선적증명서 등 수입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3. 원수가 「먹는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」 별표 1에 따른 먹는물의 수질기준에 맞는 물인지를 증명하는 서류(먹는샘물 · 먹는염지하수만 해당하며, 신고일 전 최근 1년 이내에 발급된 것으로 한정합니다) 4. 제조일자를 증빙하는 서류(제조자가 제조일자를 표시한 경우는 제외합니다) 5. 자가기준 및 규격검토서(수처리제만 해당합니다) 6. 원수가 「먹는물관리법」 제3조제2호 및 제3호의2에서 규정하고 있는 수질의 안전성을 계속 유지할 수 있는 자연 상태의 깨끗한 물인지를 증명하는 서류(신고일 전 최근 1년 이내에 발급된 것으로 한정합니다)	수수료 없음
------	---	-----------

처리절차

